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만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6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4일

발 의 자 : 임만균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김경우, 김기대,
김인제,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창원, 김태수,
김희걸,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양민규,
이경선, 이정인, 이준형,
장상기, 전석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28명)

1. 제안이유

-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매년 아동학대 전과자들이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아동학대 전과자들의 아동 관련 시설 취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지난해 6월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감금 등 아동학대가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38곳에서 총 230명의 학대 또는 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서 법령 및 제도 보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음.

- 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반복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아동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시장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1항 신설).
-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에 대한 시장의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2항 신설).
- 다.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해당 인원에 대한 시장의 해임 요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3항 신설).
- 라. 관련법령을 위반한 아동관련기관 시설 운영에 대한 시장의 폐쇄 요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아동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6조의2(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아동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u></p> <p><u>② 시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u></p>

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